

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안전총괄과

제정 2022. 12. 28 조례 제189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산소공급마스크”란 일정 시간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물품”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,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)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의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
 - 가. 「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
 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, 이천시 출자·출연 기관
2. 다음 각 목의 2층 이상 시설
 - 가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 - 나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
 - 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 - 라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4조(홍보)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산소공급 마스크 등 물품을 비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)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지원)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구입 및 비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